

#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3. 평창군수(문화관광과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(2001.4.17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과장 김근수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행정규제 위원회에서 선정된 내용을 정비하여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 요 골 자

- 마을관리 휴양지 행위허가 및 제한내용 삭제(안 제6조)
- 마을관리 휴양지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내용삭제(안 제8조)
- 마을관리 휴양지 사용허가 권리양도의 제한 삭제(안 제9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 태 영)

-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임.

- 주요개정 내용은 마을관리 휴양지 행위허가 및 제한삭제와 허가 취소·권리양도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임.
-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 하라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짐
- 그러나 본 조례의 목적이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있으므로 삭제되는 내용에 대한 예상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**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**붙임: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**